

	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		문서번호	3-2-4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개정일	2022. 08. 31.			
	페이지	1/4	관리 부서	교무처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비정년트랙전임교원 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함은 임용권자와 계약에 의하여 근무기간, 급여 및 기타 근무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에 한하여 강의 혹은 실습지도 를 전담하기 위하여 비정년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② 비정년트랙 교원의 직명은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임용자격)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자격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서 고 등교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되, 특수 분야의 경우 교육능력 또는 실무 및 연구경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절차)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공개채용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원의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의 신규임용에 따른다.

③ 채용의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임용시기)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매년 3월1일 또는 9월1일자로 한다. 단, 학 기 중에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처우) ① 교원의 급여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처우는 전임교원에게 준하되, 연구비, 승급, 휴직 등은 아니 받는다.

③ 기타 처우는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의무) 교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당 책임시수는 15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강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.
2. 대학발전을 위한 업무 배정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.
3. 기타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제8조(계약기간)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②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원하면 본 대학 평가기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. 단, 학 기 중 임용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

	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		문서번호	3-2-4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2. 08. 31.	
			페이지	2/4	관리 부서

제9조(재계약) ① 교원이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 종료일 4개월전에 [별표1]재계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재계약 평가기준은 전임교원 재임용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교원업적평가가 년 평균 60점 이상
2. 연구실적이 60% 이상
3. 교원품위는 80점 이상

③ 총장은 대학발전 기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가할 수 있다.

④ 교무처장은 제2항이 충족되면 교원인사위원회의의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규정변경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. 단, 재계약 임용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.

	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	문서번호	3-2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	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	문서번호	3-2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4/4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1]

재계약 신청서

신청자 성명 :

현 직급 :

임용일 : 년 월 일

연번	평가내용	기준	자가평가	비고
1	교원업적평가	학년도		
		학년도		
2	연구실적	논문		
		저서		
		연구보고서		

* 연구실적목록표 첨부

상기 내용으로 재계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